

2007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

김 종 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Ⅰ. 머리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06년 지방세법령 개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006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은 2006.7.31부터 2006.8.10까지 관계부처 의견협의, 9.1부터 9.21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6.10.27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으로 2006.12.22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하위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2006.12.30에

법률과 함께 공포되어 2007.1.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에서 2006년에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1. 연대납세의무 추가(제18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 <신 설>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짐

< 개정이유 >

-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대상에 추가
 - ※ 「국세기본법」 제25조제4항 개정(2006.4.28)

2.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규정 정비(제22조본문)

현 행	개 정
○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 개정이유 >

-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2004.1.29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 정비(한국증권

거래소⇒한국증권선물거래소)

※ 국세기본법 제39조 개정(2006.4.2)

3. 전자송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규정 신설(제51조제1항 등)

현 행	개 정
○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u>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u> 송달	○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u>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u> 에 송달
○ 서류의 송달은 <u>교부 또는 등기우편</u> 에 의함	○ 서류의 송달은 <u>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u> 에 의함
○ <신설>	○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행함
○ <신설>	○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 등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음
○ <신설>	○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신설>	○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봄

〈 개정이유 〉

- ◆ 납세편의 및 정보화시대에 맞게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4. 서류의 교부송달시 수취인 서명날인 방법의 개선(제51조의2제2항)

현 행	개 정
○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함	○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함

〈 개정이유 〉

- ◆ 현행 송달서에 납세고지서 등 서류교부시 수취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무인)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서명 또는 날인 중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개정

5. 납세고지서 등의 납기한 연장(제51조의2제4항)

현 행	개 정
○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함	○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함

〈 개정이유 〉

- ◆ 납세고지서 등이 납기한이 경과후 도달하거나,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현행 납기한인 7일은 촉박하여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납세편의를 위해 14일로 연장

6. 토지수용등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범위 일부 제한(제109조제1항)

현 행	개 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 <u>농지 외의 부동산등</u> 가. 수용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수용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 다. 수용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농지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개정이유 〉

- ◆ 일부 부동산 보상자금이 투기성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비과세 지역적 범위를
- ◆ 전국 모든지역에서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도 및 연접 시·군·구와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로 제한
 - ※ 농지의 경우에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비과세
- ☞ 공포일(2006.12.28)이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7. 사원임대용 부동산 등록세 중과제외에 따른 사후관리규정 신설(제138조제1항)

현 행	개 정
○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정이유 〉

- ◆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규정이 없어 등록세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고 매각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사원임대용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도모 및 다른 중과세 예외 업종간 형평유지

8.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제165조제1항 등)

현 행	개 정
○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u>그 갱신에 따른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함</u>	○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연도분 면허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 개정이유 〉

- ◆ 면허 취득시 수시분면허세 납부 후 익년도 1월에 정기분면허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분면허세 납부시 익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 선납시 납부금액 10%할인

9. 소득할 주민세 가산세 부과 개선(제177조의3제1항)

현 행	개 정
○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u>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u>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음	○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u>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u>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음

〈 개정이유 〉

- ◆ 소득할주민세 납세지 또는 시군구별 안분세액 오류의 경우,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에서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 ◆ 수정신고기한을 현행 신고납부일 60일 내에서 부과고지전 까지로 연장하여 착오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완화

10.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의 개선(제188조제3항)

현 행	개 정
○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적용 기간제한 없음	○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

- ◆ 일부 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 제도의 본래 제도취지와 다르게 재산세를 깎아줌으로써 공평과세 기반이 흔들리는 등 탄력세율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탄력세율 남용방지를 위한 적용 요건 및 기준강화

☞ 2006. 9. 1공포(2007. 1. 1 시행)

11.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제출 요건 정비(제196조의13)

현 행	개 정
○ 당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세영수증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이지 않아도 됨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세영수증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이지 않아도 됨

〈 개정이유 〉

-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2005.12.30)으로 2006.1.31부터 행정기관간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24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12. 학교법인의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과세대상 제외(제260조의2)

현 행	개 정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한다)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 개정이유 〉

- ◆ 지방교육세의 조세성격상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과세하는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능률 제고

13.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납세담보 규정 신설(제260조의4제1항)

현 행	개 정
○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u>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사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함)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세담보도 함께 요구할 수 있음</u>

〈 개정이유 〉

- ◆ 현재 담배소비세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을 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제공받고 있으나, 그 근거규정이 없어 납세담보의 실행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납세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14.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가.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제26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 행	개 정
○ 〈신 설〉	○ <u>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동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매도당시 소유자 및 그 포괄승계인이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경감</u>

〈 개정이유 〉

- ◆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영희생지원사업으로 매입·환매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

나.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신설(제269조제6항 신설)

현 행	개 정
○ 〈 신 설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법에 의하여 연금보증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이 동법 제9조제2항제4의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 다만, 담보물 제공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개정이유 〉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모기지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 면제
※ 역모기지대상주택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 ◆ 역모기지 대상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25% 감면(감면조례)

다.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제271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 〈 신 설 〉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 개정이유 〉

- ◆ 민영교도소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영교도소의 설치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면제

라.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제27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 〈 신 설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개정이유 〉

- ◆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대도시(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여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경감(감면조례)

15.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조항 일제 정비

가.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 등

관련단체(시설)	현 행	개 정 안
대한석탄공사 (§ 285②)	■ 탄좌* 설정대상 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에 대하여 취·등록세 50% 감면 * 산업자원부 장관이 설정하는 석탄채굴구역	■ 1999년 이후 개발실적이 없고, 사실상 탄좌설정광구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삭제
환경관리공단 (§ 286①)	■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50% 경감	■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어 최근 사업실적 및 신규사업 계획이 없으므로 삭제
선박사업자 (§ 284④)	■ 연불수출* 선박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공동시설세 면제 * 대금의 지불을 일정기간 연기하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방식	■ 최근 연불수출선박 수주실적 없으므로 삭제

나. 수익창출법인 감면 축소

관련단체(시설)	현 행	개 정 안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 269⑤)	■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 사업시행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분양 또는 계약금·중도금의 환급을 보증	■ 보증수수료 수입 등 영업실적을 고려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다. 공동시설세 감면 폐지

관련단체(시설)	현 행	개 정 안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이상 § 287①1~3) 대한적십자사(§ 288①1) 한국소비자보호원(§ 288①3) 기술·체육진흥단체(§ 288②)	■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 공동시설세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목적세 이므로 공공법인 또는 공익단체에 대하여도 실비를 징수함으로써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충당
독립기념관(§ 272①1) 한국철도시설공단(§ 289④)	■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면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상 § 289⑤)	■ 공공시설물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도시계획·공동 시설세 면제	
한국철도공사(§ 289⑥)	■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사업소세 50% 감면	

III. 지방세법 시행령 및 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송달제도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영 제39조의4 내지 제39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 <신 설>	○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신 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
○ <신 설>	○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함

〈 개정이유 〉

- ◆ 전자송달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한 기재내용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절차 개선(영 제55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 〈신 설〉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행정자치부장관이 도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정이유 〉

-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분청에 청구서 1부를 송부하고,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시기 명확화(영 제73조제1항)

현 행	개 정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개정이유 〉

- ◆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으로 검증된 취득은 사실상 취득일, 검증되지 아니한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각각 적용하고 있으나

- ◆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불명확하여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취득시기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함

4.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 범위 개선(영 제79조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2. 「초·중등교육법」 및 「<u>고등교육법</u>」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u>평생교육법</u>」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2. 「초·중등교육법」 및 「<u>고등교육법</u>」에 따른 학교, 「<u>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u>」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u>평생교육법</u>」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개정이유 〉

- ◆ 국내 교육기관인 학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 ◆ 국내 학교법인과 과세 형평성 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

5.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리(영 제79조의5제2항제2호)

현 행	개 정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u>호주승계인</u> 3. 최연장자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u>삭 제</u> 3. 최연장자

〈 개정이유 〉

- ◆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용어(호주승계인) 삭제(2008.1.1부터 적용)

6.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표산출방법 개선(영 제82조)

현 행	개 정
○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u>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u>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함	○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u>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u>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함

〈 개정이유 〉

-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변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지목변경전 가액을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함

7.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송부방식 등 개선(영 제91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 <신 설>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신 설>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료부터 제출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정이유 〉

- ◆ 2006년 6월 1일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전자적 이미

지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납부 영수증 대신에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

8. 특허권 등 등록세 납부기한의 개선(영 제104조의2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 <단서 신설>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함

< 개정이유 >

- ◆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를 특허권 등의 수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 도모
- ※ 특허권 등의 수수료는 접수일까지 납부

9. 면허세 종별 구분 개선(영 제124조제3항, 제1항 별표 등)

현 행	개 정
○ 제조 또는 가공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 부과	○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 부과
〔별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제1종〉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별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제1종〉 57.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제2종〉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미만의 것.	〈제2종〉 57.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미만의 것
124. 정보통신공사업 〈제3종〉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미만의 것.	124. < 삭 제 > 〈제3종〉 57.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미만의 것.
132. 무선국 개설. 다만,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u>아마추어 무선국을 제외함</u>	132. 무선국 개설. 다만,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u>아마추어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u>

〈제4종〉 57. 전기공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을 제외함 〈제4종〉 57.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

〈 개정이유 〉

- ◆ 품목별 수입허가에 대한 면허세도 품목별 제조 및 가공업허가 등의 면허세와 과세형평유지 및 수입업자의 과중한 세부담 완화 필요
- ◆ 정보통신공사업은 업종 성격이나 영업형태 측면에서 전기공사업과 유사하므로 업체의 규모별에 따라 종별을 세분화하여 유사업종간의 과세형평 유지
- ◆ 응급의료정보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고 응급의료 등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0.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기준 명확화(영 제130조의5)

현 행	개 정
○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 개정이유 〉

- ◆ 시군별 법인세할 주민세액은 시군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안분 대상인 시설물은 “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송전철탑”에 한하여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신고시 불편해소

11.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부과방법 개선(영 제131조의2제1항)

현 행	개 정
○ <단서 신설>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함

< 개정이유 >

- ◆ 공장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

12.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조정(영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등)

현 행	개 정
○ <단서 신설>	○ <u>유원시설업·휴양업의 부설 주차장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함</u>
○ <신 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신 설>	○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개정이유 >

- ◆ 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의 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차장용 토지범위 확대 및 스키장, 대중골프장,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의 원형보전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
※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2006.7.6, 서비스업 제조업의 보유세 부담 차별 해소)
- ◆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
※ 지목이 묘지인 개인 묘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13. 등록세 면제대상인 합병요건 개선(영 제227조)

현 행	개 정
○ 제2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 2. (생략)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간의 합병	○ 제2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6. <삭제>

〈 개정이유 〉

- ◆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청산되어 등록세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간의 합병에 대한 등록세 감면 규정 삭제

14. 근거법령 개정 및 용어개선에 따른 조문정비

- 「산림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영 제132조제2항)
- 「도시공원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영 제132조제2항)
- 「철도법」 → 「철도안전법」(영 제132조제2항)
- 싸이로 → 사일로(영 제75조의2제2호, 제130조의5제2항, 제202조제1항제2호)

15. 비과세용 토지등 수용확인서 서식 법제화(규칙 제40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 <신설>	○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는 토지 등이 수용(매수, 철거를 포함한다)되는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 토지등 수용확인서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

- ◆ 「국무총리훈령·지시 일제정비에 관한 훈령(국무총리훈령 제312호, 1995.6.2)」에 토지 수용확인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함과 동시에 훈령은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토지수용확인서는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에 관련규정 신설

IV. 2006년 지방세법(부동산세제) 개정내용

1.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부담 완화(법 제195조의2, 2006.9.1 시행)

- 2006년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투기와 관련 없는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 가중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부담 상한 적용율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모든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 : 직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	■ 3억 이하 : 100분의 105 ■ 3억초과 6억이하 : 100분의 110 ■ 6억초과 : 현행유지(100분의 150)

공시가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2. 주택분 취득·등록세 경감(법 제273조의2, 2006.9.1 시행)

-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경감

변 경 전	변 경 후
■ 개인간 거래 2.5% (취득세 1.5%, 등록세 1.0%) ■ 법인과 거래 4.0% (취득세 2.0%, 등록세 2.0%)	■ 개인·법인 모두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거래세 부담 완화 및 조세형평성 제고

IV.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은 전자송달 제도도입,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과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편의 증진, 지방이전 공공기관, 역모기지제도 및 민영교도소 등 국가추진 주요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조항의 기한도래(日沒)에 따른 재조정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세제개편이다.

그 중에서도 감면조항의 개정은 매 3년마다 도래되는 일몰규정에 따라 감면의 기득권화 및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성 없는 감면의 폐지, 수익창출법인의 감면 축소 및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를 과세전환하는 한편, 서민·농어민 및 중소기업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3년간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면제도는 농어업지원,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지원, 지역균형개발 및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이나, 감면제도 자체는 조세 공평주의를 저해하는 것인 만큼 향후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감면을 축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06년도 지방세법은 정부입법안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에 따른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및 탄력세율 제도개선(노현송의원 대표발의), 주택에 대한 거래세 인하(심재덕의원 대표발의 이상 2006. 9. 1 대안으로 공포)』와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범위 일부 제한(양형일의원 대표발의, 2006. 12. 28 공포)』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되어, 한해 동안 무려 3회에 걸쳐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진기록이 연출될 만큼 지방세법에 있어서 특별히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

